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2항 관련 별표2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(단위: 원)

구 분	기 준	요 액
아. 자격시험 관련		
(1)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 교부 신청	1 건	5,000
(2)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	1 건	50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